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규정

제정 : 2011.04.20
개정 : 2011.11.22
개정 : 2014.11.01
개정 : 2018.09.13
개정 : 2020.03.01
개정 : 2021.12.01
개정 : 2022.12.01
개정 : 2023.10.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의 제반 발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01.>

1.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 예·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기획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6. 재정지원사업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개정 2023.10.16.>

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입학학생취업처장, 사무처장, 국제교육원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01., 2018.09.13., 2020.03.01., 2023.10.16.>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2.01.>

②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12.0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12.01.>

제6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제7조(기타)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1.>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